
대구대학교와 좋은문화병원의 업무제휴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좋은문화병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국가 저출산 및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류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저출산 및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저 출산 및 난임 관련 공동연구 수행에 관한 상호협력
2.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및 우수 인력 채용
3.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
4.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협조
5. 기타 협력사항

제3조(협약의 이행) 위 제2조에서 정하는 분야를 실행하기 위해서 양 기관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고 세부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효력) 본 협약의 체결은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상호 동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. 본 계약은 어느 일방이 협약의 파기 또는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지된다.

제5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 한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18. 10. 5.



대구대학교



총장 김상호



좋은문화병원

병원장 문화숙

